

대학원 규제과학융합전공 내규

2026. 8. 31. 제정

제1조 적용범위

본 내규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.

- 1) 2026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본 내규를 적용한다.
- 2) 2026학년도 후기 이전 입학생으로, 제약산업학과 혹은 식품영양학과에서 규제과학융합전공으로 전공을 변경한 학생은 원칙적으로는 소속 학과의 내규를 적용할 수 있다.

제2조 입학 전형

- 1) 대학원 입학전형의 배점기준은 석사, 박사 및 통합과정이 동일하고, 상세 평가 기준은 각 소속 학과 내규를 따른다.
- 2) 전형위원은 대학원 학과장을 포함하여 석사학위과정 3인, 박사학위과정 3인을 원칙으로 한다. (지원자가 많을 경우 그룹을 나누어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.)

제3조 대학원 석·박사과정 교과과정

- 1) 규제과학융합전공의 공통필수과목은 아래와 같다. 공통필수 과목 중 1개를 이수해야 한다.

[공통필수과목]

NO	학수번호	교과목명	시간/학점
1	G16655	규제과학특론 (구)의약품허가심사I 교과목 변경	3.0/3.0
2	G19002	글로벌규제가이드라인의 이해	3.0/3.0

- 2) 석사학위 과정은 핵심과목 중 2과목 이상, 박사 및 통합과정은 3과목 이상을 수강한다. 핵심 과목은 아래 표에서 표시된 과목과 지도 교수님 개설 교과목, 약학과, 제약산업학과 및 식품영양학과 개설 교과목을 포함한다.

[핵심과목]

NO	학수번호	교과목명	시간/학점
1	G16653	신약개발론	3.0/3.0
2	G16654	의약품제조관리(GMP) I	3.0/3.0
3	G16656	Leadership & Communication	3.0/3.0
4	G16816	의약품경제성평가방법론I	3.0/3.0
5	G16817	통계분석방법론 I	3.0/3.0
6	G17173	약물역학	3.0/3.0
7	G17175	보험약가정책론	3.0/3.0
8	G18930	통계분석방법론II	3.0/3.0
9	G19001	위해평가론	3.0/3.0
10	G19003	신약개발을 위한 오믹스·오가노이드 융합기술	3.0/3.0
11	G19004	임상연구설계및문헌평가	3.0/3.0
12	G17730	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평가론	3.0/3.0
13	신설예정	식품위해성 평가 및 독성학 (AR691 식품안전성 및 독성학)	3.0/3.0
14	신설예정	세포배양식품 글로벌 규제과학 (AR798 국제규제학: 식품신소재 및 의약품)	3.0/3.0
15	신설예정	미래식품소재학 (AR698 미래식품신소재학)	3.0/3.0

제4조 졸업이수학점

석사 24학점, 박사 36학점, 통합 60학점으로 한다.

제5조 보충과목제도

- 1) 약학, 제약산업학, 식품영양학 관련학과 출신인 경우에는 보충과목을 부여하지 않는다.
- 2) 약학, 제약산업학, 식품영양학 관련학과 이외 다른 학과 출신인 경우에는 지도교수 및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출신학교성적 중 수강한 전공교과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충과목을 부여한다.

제6조 종합시험

- 1) 석사학위과정, 박사학위과정, 통합과정 모두 수료학점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는 학기에 시행 가능하며, 석사학위과정은 전공과목 2과목(이중 3학점 1과목 이상),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은 3과목(이중 3학점 2과목 이상)으로 한다.
- 2) 시험일은 6월과 12월에 시행하고, 구체적인 시험일은 학과장이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확정 시행한다.
- 3) 합격점은 70점 이상(100점 만점)으로 한다.

- 4) 50점 이상인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. 50점 미만의 경우 재시험 응시 자격이 없고, 졸업이 한 학기 연기된다.
- 5) 석·박사 통합과정 학생이 석사로 변환하여 석사학위를 받는 경우, 적어도 1학기 이전에 결정하고, 석사종합시험을 통과한 후, 논문을 제출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 영어시험

- 1) 영어시험은 공인어학능력시험의 성적표 원본 또는 사본을 4월말, 10월말에 학과로 제출 하고, 영어성적표를 사본으로 보관할 경우 학과장이 원본대조 확인 후 날인하여 보관한다.
- 2) 영어시험의 합격기준은 TOEFL(IBT) 61점 이상, TOEFL(PBT) 500점 이상, TOEFL(CBT) 173점이상, TOEIC 585점 이상, New TEPS 251점 이상, IELTS 5.5점 이상으로 한다.
- 3) 언어교육원 ‘대학원 영어특강’ 프로그램을 수강 및 평가시험 통과 시 합격 처리한다.

제8조 통합자격시험

- 1) 통합학위자격은 평균성적이 3.0이상이고, 지도교수를 포함한 심사위원 3인을 구성하여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 대한 구두발표로 자격을 심사한다.
 - 2) 시험일은 심사위원과 상의하여 6월과 12월 중에 시행한다.
- 운영위원회 - 핵심 교과목의 시험문제는 시험 해당 학기에 수업이 개설된 경우에는 그 이전 학기에 수업을 담당할 교원이 시험문제를 낸다.

제9조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

- 1) 석사과정은 2학기 개시전에 지도교수를 결정한다.
 - 2)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외부인사로 할 수 있으며,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외부인사로 하여야 한다.
 - 3)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의 추천과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(원)장이 위촉한다.
 - 4)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.
 - 5)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합하여 1회를 함을 원칙으로 하고, 심사위원 2/3이상 찬성 시 합격으로 인정한다.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은 각각 1회 이상 하여야 하고, 심사위원 4/5이상 찬성 시 합격으로 인정한다.
 - 6) 논문심사와 관련한 내용은 각 과정별로 다음에 따른다.
- 가. 석사과정

(1) 졸업논문 및 심사위원제청서 제출: 지도교수와 심사일 및 심사위원에 대한 상의를 거친 후, 겨울학기 졸업을 희망하는 석사과정생은 12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, 여름학기 졸업을 희망하는 석사과정생은 6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학과 행정실로 심사위원 제청서를 제출한다.

나. 박사과정

(1) 논문지도위원회 구성: 논문자격시험(종합시험)을 통과한 박사과정생은 자격 심사 통과 후 1년 이내에,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심사를 완료 후 심사결과를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.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은 최소 1년에 1번씩 학생을 포함한 위원회를 소집하여 박사과정생의 졸업논문 진행 상태를 점검하고, 지도한 후 학위청구논문제출 여부를 결정한다.

(2) 졸업논문 및 심사위원제청서 제출: 논문지도위원회에서 학위청구논문제출이 결정되면, 겨울학기 졸업을 희망하는 박사과정생은 11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, 여름학기 졸업을 희망하는 박사과정생은 5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학과 행정실로 심사위원 제청서를 제출한다.

제10조 졸업자격기준

각 소속 학과 내규를 따른다.

제11조 학위수여

1)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본교 학위논문제출 규정 및 규제과학 융합전공 내규 규정에 따라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합격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 경우

- (석사) 제약산업학과: 약학석사 / 식품영양학과: 이학석사

- (박사) 제약산업학과: 약학박사 / 식품영양학과: 이학박사

2) 이외의 내용은 각 소속 학과 내규를 따른다.